# ■契約書■

■업 체 명: (주)아 토

■계 약명: DISTILLATION PILOT COLUMN

# (株) 아토 이엔지

경기 안산 성곡 672 (시화 APT형 공장 224호)

TEL: (031) 432 - 3614(代)

FAX: (031) 432 - 3617

E-MAIL: attoeng@chollian.net

# 계 약 서

1. 공 사 명 : 특수가스 공장 신축 배관공사

2. 공사 금액: 一金 칠억삼천만원정 (₩ 730,000,000-)(VAT별도)

3. 공사기간

ㅇ 착공 : 2002년 5월 25일

o 완공 : 2002년 11월 30일 (순도 Check 완료)

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63-1 2다 302호 (주)아토를 문상영을 "갑"이라 칭하고, 경기 안산시 성곡동 672번지 (시화 APT형 공장 224호) (주)아토 이엔지를 "을"이라 칭하여, 아래 각 항에 의거 계약을 체결한다.



일반사항: "갑"과 "을"은 계약 전항을 승인하고, 상호 신의와 성실로서 본 계약을 이행한다.

### 제1조 [ 계약의 목적 ]

본 계약은 "갑"이 "을"에게 특수가스 신축공장의 전체 배관공사를 발주하고 "을"은 그 공사를 실행하는데 따르는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[ 세부 공사 내역 ] - (견적서 참조)

#### 제3조 [계약금액]

본 계약 내용의 계약 금액을 일금 이억일천구백만정(₩ 219,000,000-)으로 한다. (V.A.T 별도)

### 제4조 [ 대금의 지급 지불 조건 ]

1. 대금 지급 시점

계약금 30 % (계약시)

기성금 60 % (설치 50%완료후)

잔 금 10 % (순도 CHeck 후)

## 제5조 [ 제품 납기 및 설치, 완료 일자 ]

계약된 제품을 "갑"이 지정하는 장소에 2002년 11월 30일까지 "을"은 설치를 하고 순도 CHeck를 완료한다.

(단, "갑"의 설치 조건이 부득이하여 지연 시는 "갑"은 "을"에게 지연 일수만큼 연장 조치한다)

제6조 [설치장소]-"갑"이 지정한 장소

#### 제7조 [ 제작 및 검사 ]

- 1. "을"은 제품의 사양 및 도면 변경시 사전에 "갑"에게 승인을 득 한 후 변경 한다.
- 2. "갑"의 요구로 제작 중인 제품 사양 변경시 또는 추가공사 발생시 공사 제작에 미미한 항일 경우 "을"은 변경에 응하며 변경 사항이 제작 상태 및 공사 금액 추가사항에 지장을 초래할 시는 "갑"과 "을"의 합의 하에 조정토록 한다.
- 3. 제작 납품시 사전 "을"은 "갑"에게 검사요청을 하여 "갑"의 검수를 사전 득 한 후 납품설치토록 한다. 이때 "갑"은 빠른 시간에 "을"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.
- 4. 검 사
  - : 배관설치완료 후 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법에 준하는 내압시험, 기밀시험 등의 제반의 설치 검사에 임하여 하자가 없어야 한다.

## 제8조 [ 채권양도 및 하도급 ]

"을"은 본 계약의 전부를 "갑"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하거나 채권양도, 집권 설정, 기타 처분행위가 발생될 시는 "갑"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고, 이로 인해 "갑"에게 끼친 모든 손해에 대하여 "을"은 변상하여야 한다.

#### 제9조 [ 지 체 상 금 ]

"을"은 제 5조에 규정한 공사기간 내에 완료치 못할 시는 1일 지연에 1/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 금액에서 공제토록 한다.

(단, 천재지변 및 "갑" 이 인정할 부분으로 인한 지연은 제외한다)

#### 제10조 [ 해 약 조 건 ]

- 1. "을"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공기 내 또는 기한 후 30일 이내에 설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.
- 2.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 시기를 준수치 않을 때.
- 3. 본 계약 조항을 위반할 때.
- 4. "을"의 귀책 사유로 해약 시 "을"은 "갑" 에게 계약금의 전액을 변상한다.

#### 제11조 [ 안전사고의 책임 ]

본 공사 기간을 "을"의 실수로 인하여 발생된 안전사고는 "을"이 민.형사상의 책임을 진다.

(단, "갑" 의 실수로 인한 안전사고는 "갑" 이 책임을 진다)

#### 제12조 [ 일 반 조 항 ]

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준하고 기타 불분명한 사항은 "갑"의 해석에 따르며, 이로 인해 소송 문제가 발생 시는 "갑"의 주소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.

#### 제13조 [계약서 보관]

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,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상호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. 상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준한다.

2002 년 5월 25일

"갑"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63-1 2다 302호 (주) 아 토 대표이사 문 상 영

갑:

"을"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672번지 시화APT형공장224호 (주) 아 토 이 엔 지 대표이사 박 강 식

을 :